

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6. 1. 6.>

보상금 지급 구분표(제22조 관련)
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

상이등급별	월 지급액(천원)	상이등급별	월 지급액(천원)
1급 1항	4,058	5급	2,116
1급 2항	3,827	6급 1항	1,931
1급 3항	3,663	6급 2항	1,778
2급	3,258	6급 3항	1,194
3급	3,045	7급	708
4급	2,555		

2.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: 월 177만8천원

3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특별공로상이자 및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

구분	월 지급액(천원)
가.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	
1) 배우자	2,138
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	2,479
3) 부모 또는 조부모	2,101
나. 4·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특별공로상이자와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	
1) 배우자	1,853
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	2,153
3) 부모 또는 조부모	1,824
다.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	
1) 배우자	680
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	982
3) 부모 또는 조부모	645

비고: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.